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1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15명 이내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
- 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제20조)
- 마.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21조~제24조)
- 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26조)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함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안 부칙)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부칙에 종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법률 규정,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6년 회계부터 적용),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보조사업자와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조사업 공고, 신청자 결정,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관하여 규정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과 사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5. 1. 15일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예 따라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적용해 오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

방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2014. 11. 20. ~ 12.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기본 원칙 등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방보조금을 투명한 회계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적합한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단체 지원업무의 안전과 단계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 사회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공익사업 관련 조례 제정 시 즉시 폐지하여 법률의 적용에 혼란이 없어야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